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90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곽규택 · 이현승 · 주진우  
최수진 · 김은혜 · 김민전  
서지영 · 안철수 · 조배숙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이용자는 해당 댓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게시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

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의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2.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특정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의미한다)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정보가 대량으로 게재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3. 제2호에 따른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게시글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2항에 따른 점검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5부터 제4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및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43조의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의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u></li> <li><u>2.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우회 접속(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하여 접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u></li> </ol>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3. 제2호에 따른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게시글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기술  
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제2항에 따른 점검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

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  
영·관리 실태 및 관련 자료  
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p><u>4의2.</u> ~ <u>4의6.</u> (생략)</p> <p>5. ~ 24. (생략)</p> <p>④ (생략)</p>	<p><u>거짓으로 제출한 자</u></p> <p><u>4의5.</u> ~ <u>4의9.</u> (현행 제4호의2 부터 제4호의6까지와 같음)</p> <p>5. ~ 2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